

Chapter 13 The Protection System of Trademark in China

제13장 중국의 상표보호제도

1.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가) 중국의 산업재산권은 전리권(專利權)과 상표권(商標權)으로 나누어진다. 전리권은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이를 전부 전리법이 규율한다. 상표권은 상표법이 독자적으로 규율한다.

권리유형		보호대상	보호법령
지식재산	산업재산권	발명 : 제품,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방안(제품 발명, 방법 발명, 용도 발명) 실용신안 : 제품의 형상, 구조 및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 방안. (제품에만 한정됨.) 의장 : 제품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미적 감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전리법
		상표권	상표, 지리표시, 서비스표상표권
재산	저작권	문학작품, 촬영작품,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등 도형작품, 모형작품,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법
산권	기타권	영업비밀 노하우, 클라이언트 정보 등 영업비밀의 구성조건 (1)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 (2)정보의 경제적 가치 (3)상대적인 비밀성 (4)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합리한 보호 조치를 취하였을 것	부정당경쟁방지법(관련법규 : “영업비밀 침해 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상국의 약간규정”)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식물육종권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나) 산업재산권 등록

중국에서 전리권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중국 국민(중국에 상주 거주지를 가지고 있거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포함)이나 중국기업(한국인이 중국에 설립한 기업 포함) 또는 기타 조직이 전리 출원 및 전리와 관련되는 기타 사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리대리기구를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진행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지식산업권에서 지정한 전리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 전리대리기구는 국내사건만을

다를 수 있는 국내전리대리기구와 외국사건을 다룰 수 있는 섭외전리대리기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위에서 말한 "중국지식산권국에서 지정한 전리대리기구"라 함은 바로 섭외전리대리기구를 가리킨다. 현재 중국의 섭외전리대리기구 1~2년 사이에 국내와 섭외의 구분이 없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섭외전리대리기구는 대부분이 민영화되었지만 貿促會利商標事務所, 中國專利代理(香港)有限公司만은 아직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표는 외국인인 경우 전리와 마찬가지로 직접 출원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한 상표대리 자격을 가진 조직에 위임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전리대리기구와 달리, 상표대리기구는 국내, 섭외의 구분이 없다.¹⁾

2. 상표의 보호

가) 의의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일익을 담당한 지적재산권이 이제는 지적재산권의 국제화에 맞추어 그 수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면서 나날이 성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민간경제의 비중을 확대된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²⁾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라 함)는 헌법을 수정하여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 이르렀다.³⁾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들이 거의 없었으나 1982년 8월 23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지적재산권을 기초적으로 규율할 기본 재산법률들인 각종 민사관련 법률들이 극히 미비하였으나⁴⁾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보완되었다. 중국의 산업재산권은 전리권(專利權)과 상표권(商標權)으로 나누어진다. 전리권은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이를 전부 전리법이 규율한다. 상표권은 상표법이 독자적으로 규율한다.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은 1982. 8. 23일에 최초로 제정되었고 1983년 1월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1993. 3. 22에 1차 수정을 하였다. 그 후 2001. 10. 27일에 2차로 수정을 하였다.⁵⁾ 상표법의 하위 법률인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는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358号로 2002년 8월3일公布하여 2002年9月15일부터 시행되었다.

-
- 1)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 사이트를 방문하여 "상표대리기구"를 클릭하면 전국의 상표대리기구의 내역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리대리기구는 상표업무도 함께 보고 있다. <http://sbj.saic.gov.cn/sbsq>
 - 2) 金容吉, "中國의 抵當權에 관한 考察"(法學研究 제19권 제1호, 忠南大學校 法學研究所, 2008), 2면.
 - 3) 金容吉·朴冬梅, "中國의 物權法 制定動向에 관한 考察"(成均館法學 제18권 제3호,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研究所, 2006), 239면.
 - 4) 중국은 건국 이래 물권을 중시하지 않았고, 소유권 기타 물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梁慧星, 關於中国民法典編纂(法制研究 第22號, 韓國法制研究院, 2002), 205면.
 - 5) 吳漢東主編, 知識財產權法 第2版, 法律出版社, 2008, 210면.

나) 상표의 개관

상표는 先願主義에 입각하여 최초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이 절차적 방법에 하자가 없으면 상표의 등록 및 독점자격 사용 부여한다. 2인 이상의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공동으로 상표국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신청할 수 있고, 상표전용권은 공동으로 향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상표국은 등록출원 상표에 대하여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실시하는데 형식심사는 출원서 작성 정확여부와 절차의 완벽여부에 대한 심사하고 실질심사는 합법성과 명확성 및 참신성에 대한 심사하게 된다.

(1) 상표의 식별

중국은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 있는 단어나 도안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국제관행에 따르고 있어 기술적 명칭이나 일반명칭인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다. 즉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국한해서 등록이 허용된다. 아울러 타인 상품과 구별되는 가시성(可視性)과 문자, 도형, 자모, 숫자, 색깔조합 등 표지로 상표 신청등록 가능하다. 1 상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품목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상표 등록은 불가능하다. 상표등록은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주된 목적이므로 의약품과 담배류에 사용되는 상표 등록은 필수이며, 미등록 상표는 판매할 수 없다. 상품 라벨에 회사 명칭이나 주소가 표시되는 경우 상품에 부착되는 상표의 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2) 저명상표(馳名商標)의 보호

중국에서는 저명상표를 츠밍(馳名)상표라 부르는데, 저명상표란 중국내 관련 분야의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말한다. 중국에는 또한 쭈밍(著名)상표란 것이 따로 있는데 이는 지방의 공상행정관리국이 선정 발표하는 그 지방의 주지상표로서 그 한자 이름이 著名商標이기 때문에 츠밍(馳名)상표보다 더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일컫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중국에서는 저명상표(馳名商標)로 인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들은 이러한 저명상표 보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상호의 보호

“企業名稱登記管理實施辦法” 제9조에 의하면, 기업명칭은 행정구역, 자호(字號), 업종, 조직형식으로 구성됨. 예컨대, 北京市AB貿易有限公司에서 행정구역은 北京市이고, 자호는 AB, 업종은 貿易, 조직형식은 有限公司임. 중국에서 말하는 상호(商號)는 기업 명칭 중 자호(字號)를 말한다. “企業名稱登記管理規定” 제3조에 의하면, 기업 명칭은 기업신청 등기 시에 기업 명칭 등기 주무부서에서 허가함. 기업 명칭은 사전 심사비준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가

지고 있음. 그 외, “企業名稱登記管理實施辦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 설립 시 명칭은 사전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중국에서 상호에 대한 보호는 공상행정부서의 기업 명칭 등기제도를 통하여 진행되며, 기업 명칭은 단독적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설립절차의 일환으로 기업 설립 과정에서 기업명칭 사전 심사비준 절차를 통하여 등기된다. 기업명칭 사전 심사비준 절차는 우선 투자자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명칭에 관한 사전 심사비준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각하를 한다. 사전 심사비준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내에 기업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명칭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